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김규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1
----------	------

발의연월일 : 2016. 8. 5.

발의자 : 김규환 · 조원진 · 김학용

함진규 · 이찬열 · 정운천

조배숙 · 김병관 · 박명재

김정훈 · 이 훈 · 어기구

권칠승 · 최연혜 · 송기현

이철우 · 유민봉 · 우원식

김선동 · 유기준 · 김석기

송희경 · 이채익 · 김기선

장병완 · 문진국 · 곽대훈

김승희 · 박재호 · 조훈현

염동열 · 임이자 · 윤종필

의원(33인)

제안이유

발명교육은 단순암기 교육을 지양하고, 모든 지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음. 특히 지식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을 융합해 새로움을 만드는 창조형’ 인재가 필요함. 따라서 창의성을 체계적으로 발현해주는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현재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발명진흥법」에 마련되어 있

지만 발명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법률을 제정하여 유치원·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도록 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였음.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워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명교육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 나.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8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정부는 산업재산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정부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며 발명을 생활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명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방안
4. 발명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6.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전시회·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학생,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등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운영

4.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제9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운영 등) ① 국가는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및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 및 운영 실적, 시설 및 장비, 전문인력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 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발명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 및 정책연구, 조사·분석

3. 발명교육 담당교원 등 발명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그 밖에 발명교육개발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국가는 발명교육개발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당해 발명교육개발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① 정부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과정 개발·운영
2.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교재 개발·보급
3. 기업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컨설팅 및 강사 파견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정부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2. 발명교육에 관한 공동연구 및 조사
3.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

4.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발명교육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발명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발명교육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